

##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현실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- 기금출납원의 직명변경(제13조제1항)
  - 가정복지담당사무관 ⇒ 경로복지담당사무관

### 3. 의안전문 : 별첨

### 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# 5. 관계법령 : 별첨

##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3조 제1항중 “가정복지담당사무관” 을 “경로복지담당사무관”  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사무명	사무명
<p>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</p> <p>제13조(회계관리)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, 기금 출납원은 <u>가정복지담당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②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연합회장으로 하고, 기금 출납담당을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한다.</p> <p>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</p> <p>제13조(회계관리)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, 기금 출납원은 <u>경로복지담당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